再犯防止를 위한 矯正處遇에 관한 硏究

金 秀 吉

目 次

Ⅰ. 序 論
Ⅱ. 前科者의 再犯現況
Ⅲ. 再犯防止를 前提로 한 矯正處遇의 方向
Ⅳ. 結 論

Ⅰ. 序 論

現代社會의 特殊한 構造的狀況에서 犯罪에 對處하는 國家刑事政策의 思潮는 刑罰의 賦課와 執行을 위한 司法的 正義의 實現에만 머무르지 않고 犯罪人을 改善 敎化함으로써 再犯을 防止하고 社會復歸를 促進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行刑法 第1條도 「受刑者를 隔離하여 矯正敎化하며 健全한 國民思想과 勤勞精神을 涵養하고 技術敎育을 實施하여 社會에 復歸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1961年 行刑改革의 一環으로 刑務所를 矯導所로 名稱을 바꾸는 등 矯正行政組織에서 假釋放制度, 不定期刑制度의 一部成立, 累進處遇制度, 分類審査制度, 歸休制度, 精銳作業 訓練制度 等 先進諸國의 制度를 模倣傳受하여 犯罪者의 矯正處遇에 現代化와 多元化가 漸進的으로 推進되어 왔다. 그러나 矯正의 實際運營面에 있어서는 制度의 目的과 理念에는 距離가 먼 旧態依然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여 犯罪의 防止와 犯罪人의 處遇에 效率的으로 對處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大檢察廳 犯罪統計에 의하면 前科者의 再犯率은 1972年以來 每年 平均 28.6%씩 增加率을 보여 1982年度에는 무려 286.0%로 急增하였으며, 그것도 刑執行終了者가 75.0%를 차지하고 있다.[1] 따라서 大部分의 犯罪者들은 犯罪行爲→捜査 및 裁判→矯道所 收容→出所→社會復歸

1) 〈表1〉과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83號~86號 參照.

→再犯 等의 犯罪惡循環 軌道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循環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번의 犯罪가 原因이 되어 犯罪惡循環 過程에서 벗어날 수 없는 現實을 勘案할때 犯罪人에 대한 矯正處遇 諸制度에 刑事學的인 立場에서 새로이 科學的 檢討가 行하여져야 하며 이에 對應하여 前科者들에 대한 社會的 保護措置도 效果的으로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年度別 前科者犯罪人 檢擧人員 및 指數

〈表1〉

罪種別 \ 年度			1972	1973	1974	1975
刑法犯總計		人員數	27,210	30,827	32,288	43,564
		指數	100	113.3	118.7	160.1
財產犯罪	小計	人員數	15,567	17,450	17,274	20,954
		指數	100	112.1	111.0	134.6
	窃盜	人員數	9,693	10,103	9,670	10,899
		指數	100	104.2	99.8	112.4
	贓物	人員數	1,023	1,154	1,226	1,355
		指數	100	112.8	119.8	132.5
	詐欺	人員數	3,106	3,948	4,015	5,441
		指數	100	127.1	129.3	175.2
	横領	人員數	1,110	1,418	1,475	2,013
		指數	100	127.7	132.9	181.4
	背任	人員數	361	552	535	768
		指數	100	144.6	148.2	212.7
	損壞	人員數	274	305	353	478
		指數	100	111.3	128.8	174.5
强力犯罪	小計	人員數	3,055	3,310	3,691	4,974
		指數	100	108.3	120.8	162.8
	殺人	人員數	62	56	67	75
		指數	100	90.3	108.1	121.0

이에 本稿에서는 加速化傾向을 띠고 있는 前科者의 再犯을 防止하고 犯罪人의 更生을 促進하는 效果的인 施策方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前科者의 再犯現況을 檢討한 後 現行 矯正處遇制度의 實態와 問題點을 分析하고 改善方案을 提示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59,563	67,323	74,432	82,579	96,772	121,091	105,033
218.9	247.4	273.5	303.4	355.6	445.0	386.0
27,617	26,376	26,008	27,611	35,003	47,474	60,020
177.4	169.4	67.1	177.4	224.9	305.0	385.6
13,645	12,067	10,988	10,757	13,482	14,854	18,510
140.8	124.5	113.4	111.0	139.1	153.2	191.0
1,971	1,653	1,456	1,316	1,502	1,953	2,767
192.7	161,6	142.3	128.6	146.8	190.9	270.5
7,585	7,753	8,317	9,681	13,160	20,726	26,731
244.2	249.6	267.8	311.7	423.7	667.2	860.6
2,773	2,995	3,110	3,603	4,207	6,050	7,588
249.8	269.6	280.2	324.6	379.0	545.0	683.6
994	1,123	1,344	1,445	1,754	2,954	3,432
275.3	311.1	372.3	400.3	485.9	818.3	950.7
649	785	793	809	898	937	992
236.9	286.5	289.4	295.3	327.7	342.0	362.0
6,702	7,922	8,707	9,438	10,851	13,047	15,897
219.4	259.3	285.0	308.9	355.4	427.1	520.4
68	86	100	104	126	163	176
110.0	138.7	161.3	167.7	203.2	262.9	283.9

罪種別		年度	1972	1973	1974	1975
强强犯罪	强盜	人員數	327	271	386	501
		指數	100	82.9	118.0	153.2
	放火	人員數	49	48	37	37
		指數	100	98.0	75.5	75.5
	强姦	人員數	298	295	342	524
		指數	100	99.0	114.8	175.8
	暴行·傷害	人員數	2,058	2,361	2,609	3,512
		指數	100	114.7	126.8	170.7
	脅迫·恐喝	人員數	261	277	250	325
		指數	100	106.1	95.8	124.5
風俗犯罪	小計	人員數	1,468	1,732	2,268	3,757
		指數	100	118.0	154.5	255.9
	姦通	人員數	151	203	208	338
		指數	100	134.4	137.7	223.8
	婚姻憑藉姦淫	人員數	112	132	149	235
		指數	100	117.9	133.0	209.8
	賭博	人員數	1,205	1,397	1,911	3,184
		指數	100	115.9	158.6	264.2
僞造犯罪		人員數	632	709	667	823
		指數	100	112.2	105.5	130.2
公務員犯罪		人員數	68	77	60	126
		指數	100	113.2	88.2	185.3
過失犯罪		人員數	5,016	5,950	6,679	10,765
		指數	100	118.6	133.2	214.6
其他刑法犯罪		人員數	1,402	1,623	1,649	2,145
		指數	100	115.8	117.6	152.0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43號~第86號(1972-1983).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466	428	423	482	787	933	1,213
142.5	130.9	129.4	147.4	240.7	285.3	370.9
49	75	84	92	96	122	155
100	153.1	171.4	187.8	195.9	249.0	316.3
591	757	792	1,019	1,162	1,468	2,038
198.3	254.0	265.8	341.9	389.9	492.6	683.9
5,105	6,035	4,934	6,342	8,154	9,841	10,739
248.1	293.2	239.7	308.2	396.2	478.2	521.8
423	356	374	385	521	580	680
162.1	136.4	143.3	147.5	199.6	222.2	260.5
6,262	7,808	8,322	9,610	10,806	10,764	13,566
426.6	531.9	566.9	654.6	736.1	733.2	924.1
463	587	635	909	1,122	1,660	2,274
306.6	388.7	420.5	602.0	743.0	1099.3	1506.0
285	279	361	440	1,027	556	532
250.0	249.1	322.3	392.9	917.0	496.4	475.0
5,519	6,951	7,326	8,261	9,187	8,549	10,760
458.0	576.8	608.0	685.6	762.4	709.5	892.9
1,256	1,147	1,224	1,259	1,341	1,767	2,329
198.7	181.5	193.7	199.2	212.2	280.0	368.5
318	219	213	216	199	223	392
467.6	322.1	313.2	317.6	292.6	327.9	576.5
14,374	20,696	26,691	30,992	35,002	43,221	6,924
286.6	412.6	532.1	617.9	697.8	8616.7	138.0
3,028	3,153	3,267	3,444	3,535	4,594	5,905
216.0	224.9	233.0	245.6	252.1	327.7	421.2

Ⅱ. 前科者의 再犯現況

1. 前科者犯罪人의 發生狀況

〈表1〉은 大檢察廳 犯罪統計資料를 通하여 最近 11年間에 걸쳐 年度別로 前科의 記錄을 가진 者 중 再次 犯罪를 犯하여 檢擧된 者의 人員數와 增減指數를 나타낸 것이다. 1972年度를 基準年度로 하여 前科者犯罪의 各 年度別 增減趨勢를 보면, 每年 平均 28.6%의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1972年度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73年에 113.3, 1974年에 118.7, 1975年에 160.1, 1976年에 218.9, 1977年에 247.4, 1978年에 273.5, 1979年에 303.4, 1980年에 355.6, 1981年에 445.0 그리고 1982年에는 386.0로 急激히 增加하였다.

이를 罪種別로 分析해 보면, 財產犯인 경우는 背任, 詐欺, 橫領 等이 各各 950.7, 860.6, 683.6으로 相當한 增加指數를 나타내고 있는데 反하여 窃盜는 191.0에 머물고 있다. 强力犯인 경우는 强姦과 暴行·傷害가 各各 683.9와 521.8로 增加하고 있고 그 이외의 犯罪는 緩慢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風俗犯罪는 姦通이 1506.0, 賭博과 偽票犯이 892.9로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이에 關聯하여 總犯罪者 중 前科者의 構成比率을 보면, 지난 10年間에 있어 前科가 있는 者의 構成比率은 每年 增加하는 趨勢이다. 1972年度에 刑法犯 總數 218,170名 중 前科가 있는 犯罪者數는 27,210名으로 7.4%에 不過하였으나 1975年度에는 18.4%, 1980年度에는 27.5%, 1981年度에는 30.1% 그리고 1982年度에는 30.5%로 每年 그 構成比率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82年度에 檢察處分이 끝난 前科者犯罪人 總 105,033名 중 前科 1犯이 46,915名으로 全体의 44.7%를 차지하고 있고 5犯이상도 12.2%를 나타내고 있다.[2]

이와 같이 再犯率이 漸增·加速化하고 犯罪의 手法도 知能化·粗暴化의 傾向을 띠고 있는 것은 行刑施設內 矯正作用이 效率的으로 運營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犯罪의 習癖, 釋放後의 事後管理의 等閑에 따른 生活의 無秩序, 社會生活에서 疎外感, 家庭的 迎合忌避에다가 善良한 隣近과 生活의 本據地인 家庭보다 同僚間(惡友 또는 釋放同僚 等)의 友誼의 義理를 重視하고 健全한 社會보다 犯罪者群像속을 찾아 同類型者가 集團을 아루어 그 社會속에서 放縱의 過去 遊蕩의 事蹟이 對話의 主題가 되기도 하여 비뚤어진 意識이 体質化된 것으로 判斷된다.[3]

---

2)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43號~第86號(1972-1983) 參照.

3) 金鎔宇, "犯罪人에 대한 處遇問題考察," 矯正, 通卷 58號(1981.2), p.19.

2. 再犯者 男女 및 成少年別

一般的으로 世界 各國의 男女의 人口 構成比率은 대개 비슷하지만 男女間에 있어서의 犯行率에는 큰 差異가 있는데 特히 女性의 再犯率은 男子의 그것에 比하여 顯著하게 낮다. 〈表2〉에서 前科者犯罪人의 男女 構成比率을 보면, 男子는 95.0%, 女子는 5.0%인바 犯罪人 總數 중 男女對比가 89.1% 對 10.9%인데 比하면, 前科者犯罪에 있어서는 男子가 더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成人犯罪人과 少年犯罪者로 區別하면 前科者犯罪人 중 成年은 94.2%이고 少年은 5.8%이다.

3. 前科者의 年齡

人間은 各 年齡期에 따라 그 身體生理條件과 精神心理狀態에 상당한 變化를 느끼게 되고 또한 社會的 生活條件에 있어서도 상당한 差異를 經驗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各 年齡層에 따라 犯罪性에도 상당한 差異를 나타낼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4] 이같은 事實을 勘案하여 볼 때 前科者犯罪人의 年齡分布를 分析해 보는 것도 커다란 意義가 있을 것이다.

〈表3〉에서 最近 5年間의 前科者犯罪人의 年齡分布를 보면, 最高 犯罪年齡을 나타낸 것은 30代이며 두번째는 20代이다. 그런데 近來에 와서 20代와 30代가 減少傾向을 띠고 있는 대신에 40代이후의 老壯年層의 再犯率이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特記할 事實이다. 이러한 最高犯罪年齡은 모든 條件에서 同一한 것이 아니고 罪種, 性別, 場所, 時代에 따라 變하기 때문에[5] 劃一的으로 어느 年齡層만을 가지고서 犯罪率 및 親近度를 測定할 수는 없다.

再犯者의 罪種別 狀況을 分析해 보면 그 樣相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窃盜는 20代(45.0%), 10代(26.3%), 30代(17.4%) 等의 順이고, 詐欺는 30代(36.0%), 40代(32.7%), 20代(16.1%) 等의 順이다. 그리고 强盜에서는 20代(55.0%), 10代(34.3%), 30代(8.0%) 等의 順이며, 暴行·傷害는 30代(34.2%), 20代(32.9%), 40代(22.0%) 等의 順인데 대하여 强姦은 20代(50.0%), 10代(25.2%), 30代(16.4%)順이다.[6] 이상에서 볼 때 窃盜, 殺人, 强盜, 强姦의 경우는 青年과 少年層에 集中하고 있는데 反하여 詐欺와 橫領 및 暴行·傷害는 中壯年層에서 많이 犯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青少年들이 이미 强盜, 强姦, 窃盜 等에 있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注目할만 한 事實이다.

4) 愼鎭琛, 刑事政策(서울: 法文社, 1982), p.188.

5) Edwin H. Sutherldnd and Donald R Cressey, Crimionology, 8th ed., (New York: J.B.Lippincott Co., 1970), p.219.

6)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83號~86號(1982-1983) 參照.

再犯者 男女 및 成少年別

〈表2〉

(1982年度)

男女 및 成少年別 / 前科回數	計	男	女	成年			少年		
				小計	男	女	小計	男	女
計	838,651	747,215	91,436	732,315	647,471	84,844	106,336	99,744	6,592
	100*	89.1	10.9	87.3	77.2	10.1	12.7	11.9	0.8
小計	269,419	255,905	13,514	253,889	240,729	13,160	15,530	15,176	354
	100	95.0	5.0	94.2	89.4	4.9	5.8	5.6	0.1
1犯	118,667	110,437	8,230	108,032	100,077	7,955	10,635	10,360	275
2犯	61,177	58,444	2,733	58,020	55,338	2,682	3,157	3,106	51
3犯	35,276	34,024	1,252	34,109	32,872	1,237	1,167	1,152	15
4犯	20,829	20,254	575	20,451	19,884	567	378	370	8
5犯이상	33,470	32,746	724	33,277	32,558	719	193	188	5
前科無	569,232	491,310	77,922	478,426	406,742	71,684	90,806	84,568	6,238

1. *는 百分率 (%) 임.
2. 計는 刑法, 特別法 및 軍刑法犯의 合計임.

資料 :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83號~86號(1982 ~ 1983).

〈表3〉 **前科者 年齡別**

年度 \ 年齡	計	19歲未滿	20~25歲	26~30歲	31~35歲	36~40歲	41~50歲	51~60歲	61歲以上
1978	74,432	3,655	11,355	13,384	13,056	13,262	14,023	4,673	1,024
	100*	4.9	15.3	18.0	17.5	17.8	18.8	6.3	1.4
1979	82,570	3,854	13,193	15,517	14,076	14,323	15,395	5,065	1.147
	100*	4.7	16.0	18.8	17.0	17.3	18.6	6.1	1.4
1980	96,772	4,542	15,412	17,764	16,593	16,347	18,762	5,033	1,280
	100*	4.7	16.0	18.4	17.1	16.9	19.4	5.2	1.3
1981	121,091	5,062	17,053	22,220	21,315	20,365	25,403	7,823	1,850
	100*	4.2	14.1	18.3	17.6	16.8	21.0	6.5	1.5
1982	105,033	6,848	13,066	15,732	16,939	16,730	25,188	8,498	2,032
	100*	6.5	12.4	15.0	16.1	15.9	24.0	8.1	1.9

*는 百分率 (%) 임.

資料 :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 67 號~86 號 (1978 ~ 1983).

4. 前科者犯罪의 原因

犯罪의 原因을 정확히 糾明한다는 것은 犯罪防遏의 對策을 講究하는데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그런데 犯罪의 原因論의 數는 매우 多樣하여 劃一的으로 解明하기란 그리 간단한 問題는 아니다. 더우기 前科者는 一般人보다도 갖가지 特殊한 事情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前科者의 再犯原因을 糾明한다는 것은 初犯者의 犯罪原因을 밝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再犯의 原因的 糾明方法을 犯罪者의 自供에 의하여 作成된 統計的 形式에 의한 原因的 分類에 따라 前科者들이 再次 犯罪行爲를 誘發한 直接的인 動機가 된 一般的 狀況을 分析하는데 限定시키고 이에 關聯하여 前科者의 生活環境을 檢討하려고 한다.

1) 前科者의 再犯動機

〈表4〉를 보면 前科者의 再犯動機는 其他를 除外하고는 利慾이 17.3%로 가장 높고 偶然 7.8%, 射倖心 5.6%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特히 財產犯인 경우는 25.9%가 利慾을 動機로 犯行을 저지르고 있고, 强力犯에 있어서는 犯罪의 性質로 보아서 怨恨憤怒가 11.3%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2) 前科者의 生活環境

犯罪의 間接原因이 되는 生活環境은 매우 廣範圍한 뜻을 內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前科者 犯罪人의 生活程度와 家族關係만을 檢討하여 그러한 事實이 再犯과 어떠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分析하고자 한다.

a. 前科者의 生活程度

Sutherland와 Cressey가 犯罪는 經濟的으로 上層階級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下層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集中하는 傾向이 있다고 指摘하였듯이[7] 經濟的 貧困은 現代社會의 犯罪現象을 明白히 밝혀주는 것이 못되더라도 直接·間接으로 犯罪와 密接한 關聯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1982年度 前科者의 生活程度를 보면 中流以上은 13.4%에 不過하고 大部分은 下流生活을 영위하고 있다.[8] 따라서 經濟的貧困이 곧 再犯의 絕對的인 原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前科者들은 經濟的貧困이 重要한 動機가 되어 再次 犯行을 저지르는 경우도 排除될 수 없다.

b) 前科者의 家族關係

7)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cit., p.219.

8)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 83 號~ 86 號 (1982-1983) 參照.

〈表4〉 前科者 犯罪原因別

(1982年度)

原因別 / 罪種	計	利慾	射倖心	怨恨憤怒	家庭不和	誘惑	偶然	麻藥覺醒劑中毒	醉中	其他
刑法犯	105,033	18,180	5,926	1,757	623	1,249	8,212	12	3,306	650,83
	100*	17.3	5.6	1.7	0.6	1.2	7.8	0.01	3.1	62.0
財產犯罪	60,020	15,553	1,307	212	70	427	2,961	6	927	38,521
	100*	25.9	2.2	0.4	0.1	0.7	4.9	0.01	1.5	64.2
强力犯罪	16,065	878	142	1,822	378	283	1,789	5	1,961	8,807
	100*	5.5	0.9	11.3	2.4	1.8	11.1	0.03	12.2	54.8
僞造犯罪	2,329	364	34	4	5	20	104	—	2	1,796
	100*	15.6	1.5	0.2	0.2	0.9	4.5		0.1	77.1
公務員犯罪	392	42	1	1	—	9	27	—	2	310
	100*	10.7	0.3	0.3	—	2.3	6.9	—	0.5	79.1
風俗犯罪	13,729	860	4,414	18	126	482	1,183	1	115	6,530
	100*	6.3	32.2	0.1	0.9	3.5	8.6	—	0.8	47.6
過失犯罪	6,924	126	4	20	10	9	1,820	—	80	4,855
	100*	1.8	0.1	0.3	0.1	0.1	26.3		1.2	70.1
其他刑法犯	5,574	321	24	375	34	19	328	—	219	4,254
	100*	5.8	0.4	6.7	0.6	0.3	5.9		3.9	76.3

*는 百分率(%) 임.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83號—86號(1982-1983).

家族關係와 前科者와의 關係는 주로 婚姻과 犯罪 卽 有配偶者·無配偶者(離婚者, 未婚者, 死別者)와 犯罪와의 關係가 問題된다. 各國의 犯罪統計 및 犯罪者에 대한 調査研究에서 확인된 바로는 成年에 이른 사람들의 婚姻關係는 犯罪에 關하여 상당히 重要性을 가지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美國에서 各 矯導所에 收容된 者의 配偶者關係를 調査한 바에 의하면, 同一한 婚姻關係에 있는 人口 10萬名에 대하여 矯導所에 들어가게 된 사람의 比率은 有配偶者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寡婦, 獨身者, 離婚者의 順이었다 한다. 다만 年齡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9]

우리의 경우 前科者의 家族關係를 〈表5〉에서 보면, 前科者犯罪人 중 有配偶者는 71.5%이며 나머지는 離婚 또는 死別을 하였거나 未婚인 者로 되어 있다. 다음 家族關係 중 子女의 有無와 犯罪와의 關係를 보면 總 前科者犯罪人 105,033名 중 子女 있는 者는 75,222名으로서 全体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配偶者 있는 者의 子女 있는 者가 72,520名(69.0%) 離婚者의 子女 있는 者가 1,377名(1.3%), 死別者의 子女 있는 者가 1,334名(1.3%) 으로 되어 있다. 또한 配偶者 있는 者로서 子女가 없는 者는 2,601名(2.5%), 離婚者 중 子女가 없는 者는 0.4%로 나타나고 있다.

5. 前科者의 處分結果

前科者에 대한 檢察處分狀況을 〈表6〉에서 보면, 1972年度에 起訴率이 76.6%이었던 것이 1982年度에는 52.9%로 減少하여 最近에 와서 檢察處分基準이 많이 緩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罪種別로 보면(1982), 起訴率이 가장 높은 犯罪는 78.8%의 起訴率을 보인 風俗犯罪이며 그 다음은 72.0%의 起訴率을 보인 强力犯罪이다. 한편 가장 起訴率이 낮은 犯罪는 32.9%의 起訴率을 보인 僞造犯罪이다.[10]

Ⅲ. 再犯防止를 前提로 한 矯正處遇의 方向

1. 行刑施設內에서의 矯正處遇

行刑施設內의 矯正處遇는 犯罪人을 矯導所나 感護所 등의 矯正施設에 收容해두고 이들을 矯正敎化하여 社會復歸를 容易하게 하고 再犯을 防止하기 위하여 行하여지는 措置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隔離와 敎化改善이란 作用을 지니고 있는 矯導所는 人的 物的 構成의 缺如 및 制度

9) Edwin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op. cit., p.217.

10) 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 83 號~ 86 號(1982-1983) 參照.

〈表5〉 **前科者 家族關係**

(1982年度)

區分 / 罪種	計	有配偶者			離婚			死別			未婚
		小計	子女有	子女無	小計	子女有	子女無	小計	子女有	子女無	
刑法犯	105,033	75,121	72,520	2,601	1,790	1,373	417	1,618	1,334	284	26,504
	100 *	71.5	69.0	2.5	1.7	1.3	0.4	1.5	1.3	0.3	25.2
財産犯罪	60,020	41,376	40,046	1,330	1,052	806	246	915	761	154	16,677
	100 *	68.9	66.7	2.2	1.8	1.3	0.4	1.5	1.8	0.3	27.8
强力犯罪	16,065	9,676	9,198	478	279	208	71	222	185	37	5,888
	100 *	60.2	57.3	4.9	1.7	1.3	0.4	1.4	1.2	0.2	36.7
僞造犯罪	2,329	2,071	2,022	49	49	40	9	32	28	4	177
	100 *	88.9	86.8	2.1	2.1	1.7	0.4	1.4	1.2	0.2	7.6
公務員犯罪	392	337	323	14	4	4	4	2	1	1	49
	100 *	86.0	82.4	3.6	1.0	1.0	1.0	0.5	0.3	0.3	12.5
風俗犯罪	13,729	11,532	11,176	356	257	66	66	255	196	59	1,685
	100 *	84.0	81.4	2.6	1.9	0.5	0.5	1.9	1.4	0.4	12.3
過失犯罪	6,924	5,494	5,230	264	31	3	3	50	36	14	1,319
	100 *	79.3	75.5	4.8	0.6	0.04	0.04	0.7	0.5	0.2	19.1
其他刑法犯罪	5,574	4,635	4,525	110	118	22	22	142	127	15	679
	100 *	83.2	81.2	2.0	2.1	0.4	0.4	2.5	2.3	0.3	12.2

*는 百分率임.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券第83號～86號(1982-1983).

〈表6〉

前科者 處分結果

區分 / 年度	計	起訴				少年部送致	不起訴					
		小計	求公判		求略式		小計	起訴猶豫	起訴中止	嫌疑없음	罪가안됨	公訴權없음
			拘束	不拘束								
1972	26,972	20,655	12,372	1,560	6,723	244	6,073	356	1,075	3,825	26	791
	100*	76.6	45.9	5.8	24.9	0.9	22.5	1.3	4.0	14.2	0.1	2.9
1975	43,416	32,328	15,851	1,773	14,704	223	10,865	992	1,380	6,943	29	1,521
	100*	74.5	36.5	4.1	33.9	0.5	25.0	2.3	3.2	16.0	0.1	3.5
1978	74,432	54,075	16,226	1,810	36,039	429	19,928	1,849	2,453	11,948	59	3,139
	100*	72.7	21.8	2.4	48.4	0.6	26.8	2.5	3.3	16.1	0.1	4.2
1981	121,091	82,260	21,931	2,685	57,644	664	38,167	5,144	5,168	23,085	97	4,673
	100*	67.9	18.1	2.2	47.6	0.5	31.5	4.2	4.2	19.1	0.1	3.9
1982	105,033	55,607	22,622	3,024	29,961	1,059	48,367	8,017	7,321	27,038	94	5,897
	100*	52.9	21.5	2.9	28.5	1.0	46.0	7.6	7.0	25.7	0.1	5.6

*는 百分率임.

資料：大檢察廳, 犯罪分析, 通卷第43號～86號(1972-1983).

上의 缺陷으로 인하여 犯罪의 豫防과 犯罪人의 處遇에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檢討하고 改善方案을 提示하려는데 있다.

1) 分類의 科學化

受刑者의 處遇를 그의 改善更生 및 社會適應化의 目的에 따라 合理的으로 組織化하기 위한 技術的 方法으로서 現代의 行刑制度上 가장 重視하는 것이 受刑者의 分類制度이다. 受刑者分類制度(Classification of prisoners)란 受刑者의 戒護 및 矯正處遇의 合理化를 위하여 그들 各人의 個性을 各 方面으로 分析하고 이를 기초로 그들을 몇가지 類型으로 分類한 위에 分類收容·分類處遇를 行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受刑者分類制度는 첫째, 個個의 受刑者를 敎化改善하는데 가장 有效適切한 訓練方法을 찾아서 그것을 處遇過程에 導入하여 矯導所의 矯正機能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으며, 둘째, 犯罪的 惡性感染의 防止에 기여하게 된다. 矯導所는 社會惡에 汚染된 多數의 惡性者들의 大集團이기 때문에 그들의 個性을 考慮함이 없이 拘禁을 擔當하는 矯正當局의 편의한대로 一方的인 方法으로 犯罪人을 劃一分類하여 處遇를 한다면 敎育效果는 期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惡質的인 受刑者의 犯罪性 汚染으로 惡性蔓延의 弊端을 招來하게 된다.

受刑者를 分類함에는 受刑者 各人의 個性, 能力, 性別, 年齡, 刑期, 犯數, 罪質, 敎育程度, 社會經歷, 家族關係 및 犯罪原因 等을 科學的으로 診斷分析할 것이 必要하다. 이에는 醫學者, 精神醫學者, 犯罪心理學者, 犯罪社會學者, 犯罪生物學者, 社會事業家, 敎育學者 等 專門的 訓練을 거친 일단의 職員에 의하여 行해진다.

日本에서는 1959年에 東京矯正管區의 中野刑務所內에 分類센터를 設置한 이후 各管區(全國 8個管區)마다 分類센터를 하나씩 設置하고 있는데, 同 分類센터에는 分類業務의 專門職員과 審査用 科學器材를 具備하여 2個月의 審査過程을 거치는 正確하고 体系的이며 組織的 分類業務를 執行하고 있다.[11] 우리 나라는 이러한 分類센터의 設置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1964年 이전에는 各 矯導所 單位로 「分類審査委員會」를 두어 소극적인 分類審査를 하다가 法務部長官訓令으로 受刑者分類審査方案이 새로이 시달되어 各 矯導所마다 分類審査係를 두어 그 分類審査作業을 더욱 積極的으로 推進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9年 5月 現 矯正累進處遇制度가 實施되면서 이를 同制度의 일환으로 포괄규정함으로써(矯正累進處遇規程 第4－13條) 이를 더욱 体系的으로 推進하게 되었지만[12] 그러나 現在까지 分類를 專擔할 專門家를 별반 確保하지 못한 實情이고 또한 專擔機構의 擴充도 實現되지 못하여 分類審査가 効率化가 되지 못하고 있다.

11) 權純永·許柱旭 共著, 行刑學(서울：一潮閣, 1979), p.63; 崔宗赫, "矯正作用으로서의 處遇," 矯正, 第8卷(1976,12), p.51 參照.

12) 愼鏞廈, 前揭書, p.641; 金銘宇, 行刑管理論(서울：國民書館, 1977), pp.171-172.

受刑者의 分類制가 矯正處遇의 方向을 提示하는 機能을 發揮한다는 점을 考慮할때 分類審査의 科學化 및 專門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첫째 科學的 分類審査業務를 遂行할 專門的 技術을 硏究한 專門家의 確保이며, 둘째는 業務를 뒷받침할 先進 分類審査 機器가 具備되어야 하며, 셋째는 새로운 分類技法의 導入으로 分類審査의 革新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13], 넷째는 可能하면 全國을 수개의 管區로 나누어(矯正管區制) 各 管區마다 分類專門矯導所를 하나씩 設置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中部, 湖南, 嶺南 等 最少限 3個地區에 綜合分類센터를 設置하여 運營하는 方案이 模索되어야 할 것이다.

2) 職業訓練의 專門化

受刑者의 大多數가 生活水準이 下流階層이고 勤勞意慾을 喪失하였거나 勞動을 賤視하는 無爲徒食과 懶怠心의 所有者가 많다. 이러한 惡習의 受刑者를 矯正하고 勤勞意慾을 鼓吹하여 自發的 自治精神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는 職業訓練을 通하여 이들의 勤勞精神을 涵養하고 技術을 習得시켜 出所後 勤勉하게 生活함과 아울러 各種의 資格證을 획득케함으로써 出所後 生計의 原動力이 되게 하여야 한다. 特히 技能을 갖지 못한 受刑者의 경우 그 必要性은 切實하며 이는 高級技能人力養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現在 우리 나라의 受刑者 職業訓練은 公共職業訓練, 民間企業体支援職業訓練, 精銳職業訓練, 一般職業訓練의 4種의 体制로 區分·施行되고 있으며 또한 職業訓練을 직접 目的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矯導作業 實施에 따라 附隨的으로 職業訓練이 이루어지고 있다.[14] 그래서 그동안 많은 受刑者에게 職業訓練을 實施하여 各種 技能資格을 取得케 하였고 出所後 就業을 斡旋하는 등 그 成果가 많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全般的으로 各 受刑者에 適合한 職業訓練을 시킬 諸般施設과 職業技術指導面 및 訓練場數의 不足으로 效率的인 職業訓練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受刑者들이 出所하여 自己生計를 維持하고 社會에 成功的으로 復歸하는 데 必要한 基本的 敎育과 職業的 및 社會的 技術을 缺如하였을 경우는 再次 犯罪를 犯할 可能性이 增大될 수 있으므로[15] 受刑者에 대한 職業은 그들이 出所後의 就業 내지 將來 生計의 維持面을 考慮하여 직접 貢獻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첫째, 受刑者의 職業, 適性, 職業歷, 出所後의 生計, 年齡, 刑期, 身体條件, 性格, 將來希望, 기타 事情을 考慮한 合理的인 職業訓練生의 選擇이 있어야 한다. 둘째, 職業訓

13) 金振煥, "更生保護의 理論과 實際 및 改善方案," 法務硏究, 第八號(1981), p.202.

14) 姜求眞, "受刑者 職業訓練制度 實態에 關한 硏究(I),"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法學, 第20卷 2號(1980), pp.321-332 參照.

15) Correctional Institutions Can Do More To Improve The Employability of Offenders,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Comptroller General,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GD-79-13 Feb,6.1979, p.2.

練은 出所後 職業生活과 어느 정도의 關聯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實證的으로 調査함으로써 장차 實際生業과 직결되는 有望職種을 擴大 實施하는 철저한 一人一技의 技術敎育을 强化하여 自立更生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各 施設別 職業訓練施設을 獨立·專門化하고 優秀한 職業訓練敎士의 確保, 訓練種目의 多樣化 및 施設의 擴充을 기하여 自他가 公認하는 更生 復歸가 保障된 專門的 矯正職業訓練機關化하여야 한다.[16] 넷째, 外部 職業界 人事 또는 職業訓練에 대한 必要한 相談 그리고 優秀企業体와의 姉妹結緣 및 技術提携 等 緊密한 紐帶를 갖는 等 보다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社會職業狀況 및 動向에 관한 情報를 迅速히 把握하여 應用케 함으로써 受刑者들에게 就業에 대한 意慾增進과 自身들의 改善更生의 進路에 效果的인 길잡이로 誘導해줌과 同時에 職業輔導를 위한 職業訓練에 적극적인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刑期가 얼마 안되는 受刑者로서 假釋放 許可基準에 該當되는 受刑者에 대하여는 釋放前 準備의 一環으로 社會優秀企業体와의 外部通勤制(work release)를 積極 活用하는 方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受刑者들이 社會復歸後 生業에 就業할 수 있는 就業能力을 培養하고 社會適應能力을 開發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再犯을 防止하는 데도 效果的일 것이다.[17]

3) 敎育敎化의 科學化

行刑의 目的이 受刑者들을 敎化·改善시켜 健全한 社會一員으로 復歸시키는 것이 明白한 以上 矯導所內에서의 敎育敎化는 反社會的 不適應 行動을 矯正하고 生活知識의 啓發 및 精神敎育을 施行하여 民主市民的 資質向上을 圖謀시키는데 있다. 受刑者에게 實施하는 敎科敎育은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敎科敎育, 社會敎育, 情緖敎育 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 敎科敎育

受刑者에 대한 敎科敎育은 行刑法 第32條에 根據를 둔 受刑者敎育規程에[18] 의하여 施行되고 있으나 矯導所라는 特殊한 事情때문에 時間과 場所 및 設備 等의 制約을 받으므로 事實上 豫期한 敎育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敎科敎育이 보다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學校敎育과 같은 水準에서 實施하도록 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 方案으로서는 現行 矯導所의 公民科와 敎養科 課程을 改編, 合理的 效率的으로 施行할 수 있도록 地區別로 統合하여 敎育施設, 敎育課程, 敎科內容, 有資格敎師 等을 確保하여 專門敎育機關化함으로써 矯正敎育機關으로서의 所任을 다함과 同時에 中·高等, 大學校의 通信敎育課程

16) 李廷文, "矯正管理의 科學化 및 效率化," 矯正, 通卷 72 號(1982. 4), p.41.
17) 申泰雨, "再犯防止와 矯正敎化," 矯正, 通卷 30 號(1978. 10), p.44-45.
18) 1961. 12. 29 公布 法務部令 第29號.

을 設置하여 學歷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9] 그리고 教育該當者에게는 作業의 負擔과 壓力으로 부터 벗어나 教科教育에만 專念케 하여 短期間內에 集中的으로 教育함으로써 教育의 實効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法的 制度的 裝置와 補完이 있어야 하겠다.

b. 社會教育

受刑者가 釋放後 社會生活에 圓滿히 適應될 수 있게금 對人關係의 調整을 통하여 社會的 訓練을 쌓는 것을 가르치는 社會教育은 社會와는 隔離된 矯正施設의 閉鎖性을 생각할 때 極히 重要하다 하겠다. 受刑者는 自由, 放任, 懶惰 等으로 社會에서 落伍된 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社會生活에의 適應能力의 習得은 社會的集團에서 可能케 되는 것이므로 犯罪人이 生活하는 導矯所內에 있어서의 環境을 될 수 있는 限 그들의 社會生活 適應能力의 習得에 힘이 되도록 調整하고 慾求不滿이나 葛藤에 대한 忍耐力을 기르는데 보다 적극적인 研究와 創意가 있어야 한다.[20]

受刑者들에게는 矯正秩序의 確立으로 遵法의 生活化와 習性化를 심어 주어야 한다. 矯正行政은 옳고 그릇됨에 따라서 信賞必罰의 公正한 處遇로 受刑者의 惡習을 올바로 矯正하여 責任과 義務를 誠實히 移行하도록 하여 所內生活의 秩序를 確立하여 秩序를 無視하고 弛緩된 放縱生活에서 惹起된 受刑者들의 反社會的 意識構造와 生活慣習을 變改시키는 것이다. 些少한 잘못도 默過함이 없이 嚴히 다스리고 習性化된 犯法生活을 根本的으로 矯正하여 法을 違反해서는 살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皮膚로 느끼도록 하고 遵法精神으로 生活하는데서 個人의 權利와 自由가 보장됨을 確信시켜야 한다.[21] 그리고 이들에게 倫理觀을 올바르게 심어 주어서 그들의 自省과 理解로서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 情緒教育

自由가 制限되고 一般社會로부터 隔離拘禁되어 健全한 情緒觀念의 形成이 缺如되기 쉬운 受刑者들에 대하여 所內의 圓滑한 共同生活의 營爲와 出所後의 健全한 市民으로서의 情緒的 素養을 涵養시키기 위해서는 各種의 視聽覺教材의 充分한 活用은 勿論 보다 적극적인 情緒教育과 活動이 必要하다. 卽 各種 體育大會, 演劇會, 文藝創作發表會, 映畵上映, 音樂會 등의 開催와 아울러 文藝誌, 所內新聞의 發刊, 樂團의 運營, 座談會, 社會見學 實施 등 積極的이고 効率的인 情緒教育이 要求된다.[22] 또한 이를 効果的으로 指導 育成할 수 있는 專門人을 確保, 各 施設에 常駐 또는 巡廻 指導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宗教에의 歸依

19) 李廷文, 前揭論文, p.39.
20) Paul W. Tappan, Crime, Justice and Correction (New York: mcgraw-Hill, 1949), p.692 參照
21) 申泰雨, 前揭論文, p.42.
22) 李廷文, 前揭論文, p.40.

受刑者에게 深奧한 宗教生活로 引渡하는 것은 拘禁生活에서 오는 苦痛, 不安, 絶望, 挫折, 葛藤을 解消함과 아울러 過去의 惡習을 悔悟反省케 하며 肯定的 思考와 犧牲精神을 길러 주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教會와 절 등에서 行하는 禮拜順序와 內容가운데는 社會復歸에 必要한 道德的 秩序와 非行을 豫防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3] 사람은 不確實한 狀況에서 情緖的인 支柱를 必要로 하며 失望을 하였을 때 慰安을 必要로 하고 또한 社會的 目標와 規範에서 離脫하였을 때 社會와 和解하는 일이 必要하게 되는데 이러한 限界狀況下에 있을 때 宗教는 사람을 돕는다.[24]

凶暴한 犯罪者들이 信仰에 歸依하여 過去의 生活을 悔改하고 自己의 全 生涯를 社會와 不遇한 이웃을 위하여 獻身하는 事例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受刑者에 대한 信者化運動을 積極 展開하여 그들로 하여금 確固한 信念으로써 眞理에 따라 神의 攝理로서 說得시키고 理解시키며 社會復歸를 위하여 올바른 自我를 찾게하여 社會人으로서 適格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25] 여기서 信仰의 對象은 釋迦와 예수 등을 말하나 그들을 맹목적으로 崇拜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神行을 行爲의 座右銘으로 삼아 自我를 認識함으로써 精神의 缺陷을 淨化하고 行動을 節制함을 말한다. 때문에 迷信的 宗教나 邪教는 이를 排擊하는 同時에 정당한 宗教라 하면 어떠한 宗派에 속하더라도 이를 妨害해서는 안된다. 異宗教를 信奉하는 者라 하여 受刑者를 차별적 處遇를 한다든가 異宗教教役者 사이에 軋轢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一宗一派의 宗教가 독점하는 現象이나 無宗教者의 信仰 强要도 당연히 排除되어야 한다.[26]

5) 矯正公務員의 資質向上

矯正業務는 社會에서 落伍된 犯法者들을 相對로 하는 對人的 業務라는 特殊性 때문에 矯正公務員은 受刑者의 師表가 되는 人格의 所有者로서, 그들을 善導하는 能力의 所有者로서 全人的인 資質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矯正施設이 優秀하고 훌륭한 制度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犯罪人의 矯正教化라는 莫重한 任務를 遂行하여야 할 矯正公務員이 그 所任을 다 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지 못한다면 犯罪人의 矯正教化는 期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矯正公務員들은 自身이 社會에서 落伍된 不遇한 受刑者를 새로운 人間으로 改善하기 위한 神聖한 教職者의 業務에 從事한다는 確固不動한 使命感에서 항상 勉學하는 態度로 創意力을 啓發하려는 努力이 持續되어야 한다. 한편 法務當局은 矯正公務員 專門教育機關을 新設하여 高度의 專門教育과 透徹한 精神教育을 併行實施하여 知德을 兼備한 聖職者的 矯正公務員을 確保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3) Ruth S. Cavan, Criminolog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56), p.487.
24) 李正賛, 現代行刑學 (서울: 法曹文化社, 1978), p.212.
25) 申泰雨, 前揭論文, p.43.
26) 權純永·許柱旭, 前揭書, p.310.

6) 開放處遇制度의 採擇과 擴大實施

開放處遇란 矯導所內의 在所者로 하여금 社會內에 存在하는 矯正寄與的 施設 또는 資源에 接近하게 하여 그 곳에서 矯正敎化的 處遇效果를 받게끔 하는 處遇 諸方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에 開放處遇를 위해 設置되는 特殊施設을 開放施設이라고 한다.[27] 開放處遇의 刑事政策的 意義는 ① 受刑者의 心身의 健康增進, ② 受刑者의 職場 等 生活基盤을 維持시키거나 確保, ③ 家族과 그 地域社會內의 人間關係와 生活基盤의 溫存 및 維持, ④ 短期受刑者 및 模範囚의 犯罪惡性의 感染을 防止, ⑤ 가급적 可視的인 명확한 犯罪人으로 烙印을 찍지 아니함으로써 受刑者 本人의 名譽感情을 保護하고 社會로부터의 惡質的인 疏外 및 差別을 防止, ⑥ 受刑者와 職員間의 信賴感增大에 의한 矯正敎育에의 좋은 영향, ⑦ 建設費 人件費의 經濟性이라는 데에 있다.[28]

現代 先進諸國에서는 受刑者들의 正常的인 社會復歸 및 再犯防止에 적극 기여하려는 目的下에 開放處遇制度를 採擇·擴大實施하여 커다란 成果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國民一般과 矯正當局의 認識不足으로 開放處遇가 微微한 實情에 있고 다만 歸休制, 篤志家訪問制, 外部專門家의 招聘 等의 制度가 消極的으로 運營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 方面의 施策이 별로 開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外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여러 方面의 開放處遇制度를 充分히 硏究·檢討한 후에 우리의 實情과 與件에 맞는 實用的 開放處遇制度를 採擇·施行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現實的으로 施行 可能한 外部通勤制, 歸休制, 半拘禁制 等의 施策內容을 槪觀하도록 한다.

a. 外部通勤制

外部通勤制란 施設拘禁의 受刑者가 晝間에 矯正當局이 管理하지 않는 施設外의 一定施設에서 自由로운 賃金生活者의 勤務條件下에 戒護者 없이 就業하거나 敎育 等을 自由롭게 받게 하고 夜間과 休日에는 行刑施設內에서 지내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制度이다. 이 外部通勤制는 構外作業과는 달리 受刑者가 矯正施設 밖에 있을 때는 矯導官이 監視下에 있지 아니한다. 矯導所內에서는 外部通勤受刑者는 다른 受刑者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區域에 收容되며 同 區域內에서는 一般社會의 生活에 準한 處遇를 하게 된다.

外部通勤受刑者의 就勞條件은 一般社會의 勞動者와 同一한 條件으로 同一한 賃金을 받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지만 그 賃金 중에서 일정한 比例로 國庫에 納入하고 그 殘額은 자기의 收入으로 할 수 있으므로 矯導作業에 從事하는 것보다 많은 報酬를 받을 수 있다. 이점은 受刑者가 施

27) 愼鎭英, 前揭書, p.677.

28) 李正賢 編著, 矯正保護論(서울: 選民出版社, 1983), p.205; 柳寅鶴, "矯正行政의 問題點과 改善策," 司法行政, 通卷 271 號(1983,7), p.5.

設밖의 職場에서 새로운 技術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生業持續에 대한 保障과 自信感, 生業資金의 維持 等의 更生效果를 提高시키게 된다. 또한 家族 및 一般社會와의 적극적인 접촉의 結果는 家族과의 親和維持와 釋放후의 急激한 生活變化에 適應力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以上의 效果面을 勘案할 때 本 制度를 愼重히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적극 導入 運營함이 타당하다.[29] 이 制度는 대개 刑期의 마지막 段階에서 實施되고 주로 假釋放 등의 혜택이 주어질 사람에게 釋放準備(中間處遇)의 일환으로 許用되나 逃走의 염려가 없는 한 그 이전부터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0] 特히 靑少年 犯罪者에 대하여 外部通勤制를 適用하는 것은 그 必要性도 크고 또한 그 效果가 期待된다.

b. 歸休制

受刑者의 自己改善 意慾을 鼓吹시키고 出所後 社會適應을 促進하기 위하여 模範受刑者를 條件附 歸休시키는 制度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施行되어 왔으나 이를 너무나 消極的으로 利用하는 것 같다. 스웨덴의 경우는 年間 歸休者 總數가 約 26,000 名에 이르고 있으며[31] 美國의 캘리포니아州에서는 1969 年 「72 時間 歸休制」를 實施한 이래 每月 受刑者의 5 %에게 歸休를 許可했다 한다.[32]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80 年에 128 名, 1981 年에 99 名 그리고 1982 년에는 184 名만 歸休制 惠擇을 받았다.

우리 나라에서 이 制度가 제대로 活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未歸還 事故에 대한 矯導所나 法務當局의 우려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充分히 歸休對象者를 嚴選하고 事前敎育을 시켜서라도 極少한 比率의 未歸還事故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이러한 事故에 대하여 人事措置 等 歸責이 두려워 좋은 制度를 지극히 形式的으로 運營하는 것은 矯正大道에 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33] 本 制度를 大幅 活用하는 政策을 採擇할 것이 期待된다.

c. 半拘禁制

半拘禁制란 矯導所入所 初期부터 受刑者들에게 社會內生活을 一般的으로 許用하고 社會內勤務時間이 아닌 時間에만 矯導所 等의 施設內의 拘禁生活을 하게 하는 制度이다. 이에는 夜間과 休日에만 拘禁하는 半拘禁制, 週末과 休日에만 拘禁하는 週末拘禁制, 年末年始 等의 休暇期間

29) 이 制度는 1913 年 美國의 위스콘신州에서 채택한 이래 現在 美國의 30 個州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벨기에(1932), 스웨덴(1937), 英國(1947), 프랑스(1948), 스위스(1957), 노르웨이(1958)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權純永·許柱旭, 前揭書, pp.142-143; 愼鎭瑗, 前揭書, p.656; 李正賢, 現代行刑學, pp.298 ~ 299 參照.

30) 愼鎭瑗, 前揭書, p.656.

31) 李正賢, 矯正保護論, p.208 參照.

32) N. Holt, "Temporary prison Release: Californias Prerelease Furlough Program," Crime and Delinqency, Vol.17. No.4(1974), pp.414-430 參照.

33) 柳寅鶴, 前揭論文, pp.5-6.

에만 拘禁하는 斷續拘禁 等이 있다.

이 制度는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認定하지 않고 있는데 이 制度의 利點은 短期自由刑의 弊害와 行刑經濟 및 過密拘禁의 解消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受刑者도 자신이 犯한 罪情에 대하여 責任感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通常의 刑執行과는 달리 社會生活에 支障이 없는 夜間, 週末, 休暇期間을 利用토록함으로써 그 學業이나 就業關係에 不良한 結果가 發生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家族의 扶養履行에 의한 滿足感과 自律能力 및 個人의 尊嚴性 等을 維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被害者에 대한 損害賠償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短期自由刑의 受刑者數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本 制度를 導入·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社會內處遇 (行刑施設外處遇)

社會內處遇는 犯罪人을 行刑施設에 收容하지 아니하고 一般社會속에서 自由롭게 生活하게 하면서 自發性과 自律性을 가지고 犯罪性을 矯正하고 善良市民으로 更生復歸를 도모하는 處遇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刑期를 마치거나 假釋放되어 出所한 犯罪人에게 自發的 援護를 行하는 更生保護가 그 核心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更生保護制度를 中心으로 그 運營實態와 改善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更生保護制度의 效率的인 運營

우리 나라는 日政時부터 各 地域單位로 更生保護團體가 있었으나 1961年 更生保護法이 制定되면서 法務部 監督下의 法人體로 發足하게 되어 中央에 更生保護會가 成立되었다. 1982年 末 現在 서울, 釜山, 各道에 10個의 更生保護會支部가 있으며 各 矯導所 拘置所의 單位로 31個所의 支所를 두고 있고 市郡 單位로 221個의 保護區가 設置되어 있다.

更生保護란 犯罪者로 處罰되었던 者 處罰의 猶豫된 者 等 法的拘禁施設로 부터 釋放된 者에 대하여 再犯을 防止하고 社會에 再適應하여 成功的으로 更生復歸하도록 指導監督, 輔導援護 기타 方法으로 保護하는 社會內矯正處遇制度를 말한다. 更生保護法 第1條에 의하면 更生保護 對象으로 될 수 있는 者는 ① 徵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을 終了한 者, ②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免除를 받은 者, ② 假釋放 中에 있는 者, ④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은者, ⑤ 宣告猶豫의 處分을 받은 者, ⑥ 公訴提起 猶豫處分을 받은 者, ⑦ 少年院에서 退院 또는 假退院한 者 等 7種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更生保護法은 그 保護對象者로서 檢察, 法院, 矯導所, 少年院 等 司法行刑矯正機關에서 一定期間 拘禁狀態에 있다가 釋放 또는 出院된 者를 모두 그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更生保護를 받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어야 保護를 받는 任意的 更生保護의 方法을 採用하고 있으므로 (同法 12條), 現在 更生保護의 對象이 되는 者는 그 全部가 아니고 一部의 刑餘者라고

할 것이다.[34] 卽 無依無託하여 釋放된 후 保護를 받을 家族 기타 親知와 緣故者가 없는 者, ② 家族 기타 緣故者가 있다 하더라도 歸住地까지 갈 費用이 없는 者, ③ 生活手段(技術, 資金, 就業處)을 所有하고 있지 않으므로 經濟的으로 自活할 수 없는 者, ④ 精神的 身體的 缺陷과 家族, 交友, 環境의 不良 等으로 自力으로 社會에 適應하기 困難한 者 等으로 更生保護會는 이들 중 本人의 同意나 申請이 있는 때에만 保護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更生保護法上 保護의 方法은 直接保護와 觀察保護의 두가지로 規定되어 있다. 直接保護는 出所者에 직접 物質的인 援助 等 惠澤을 여러 가지로 行하여 그 生計 및 善行에 參考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實施方法으로는 ① 就業의 斡旋, ② 職業輔導, ③ 生産道具의 貸與, ④ 身元의 保證 ⑤ 救護團體 또는 篤志家에의 依託斡施, ⑥ 歸住保護, ⑦ 敷設事業場에의 就業, ⑧ 短期의 宿泊 또는 食事의 供與 等을 그 內容으로 한다.[35] 觀察保護는 出所하여 社會人이 된 者 중 一定한 居住地가 있다 하더라도 罪質, 環境, 經歷, 年齡 기타 狀況을 參酌하여 社會에 適應해서 正常的인 社會生活이 어렵고 再犯의 憂慮가 濃厚한 者에 대하여 更生保護委員이 通信, 面接, 訪問에 의한 善行을 指導獎勵와 啓喩하여 住居 交友 等 環境을 調整하여 再犯의 素地를 除去하는 保護方法을 말한다.[36]

그런데 更生保護 措置가 現行法上 「任意的 更生保護制(Voluntary after-care)만을 規定할 뿐 有權的 更生保護制(Compuluory after-care)[37]는 規定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更生保護事業은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特히 運營面에서도 更生保護會는 人事, 組織의 行政面에서나 財政面에서 상당한 缺陷을 갖고 있어서 效果的인 再犯防止策이 되지 못하고 있다.

司法行刑矯正機關에서 一定한 拘禁狀態에 있다가 釋放된 者를 다시 再犯의 길을 밟지 않도록 社會의 再適應·自治의 길을 造成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諸施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 收容保護施設의 擴充

國庫補助金의 增大를 통해서 現在 更生保護 收容施設을 더욱 擴充하고 事業內容의 多元化를 기하여 더 많은 出所者들이 相當期間 收容保護를 받으며 社會內適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收容保護施設의 擴充은 이른바 中間矯導所(Intermediate prison) 또는 中間 處遇施設로서의 活用이 期待된다. 社會로부터 相當期間 隔離된 生活을 해 오던 受刑者들이 矯導所에서의 出所가 너무 갑작스러우면 그 社會適應이 어려울 것이 염려되므로, 그 中間段階로서 이러한 施設에 옮겨 그 社會內狀況에 익숙케 하면서 出所後의 就業處 物色, 家族探訪 等을 行하여 그

34) 姜昌鎬, "韓國의 更生保護," 大韓辯士協會誌, 1979.7. p.31.
35) 更生保護法 第5條 2項
36) 更生保護法 第5條 1項
37) 任意的 更生保護制度란 出所者 중 本人의 申請 또는 同意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更生保護를 하는 경우이고,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는 本人의 申請이나 同意가 없더라도 一定期間 强制的으로 必要한 保護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대개 假釋放者, 執行猶豫者 等 一定한 法的拘束事由가 계속되는 者에게 施行한다.

矯正, 社會再適應을 도모하게 함이 必要하다.[38]

b. 更生保護機構의 强化

更生保護會 支所設置 職員 및 保護委員의 定員 等에 관한 規則에 따르면 更生保護會 支部는 定員 3～10 人이며, 支所의 경우는 支所長 1 人으로 定員이 策定되어 있어서[39] 更生保護法 第 8 條에 規定된 支部 및 支所의 事業의 効果的인 遂行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支部 및 支所의 職員 定員을 合理的인 水準으로 增員이 있어야 하며 處遇改善도 併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職員專門化를 위한 研修教育을 實施하여 專門的 知識과 技術習得에 努力하는 한편 勤務姿勢를 刷新하고 職員의 士氣도 昂揚시켜 業務의 能率을 提高시켜 나가야 한다.

c. 更生保護委員의 確保와 活動의 强化

現行 觀察保護制度의 成敗는 오로지 一線에서 觀察保護를 實施하는 保護委員의 活動力 여하에 달려 있는 만큼 이의 委囑은 地域社會의 篤志家로서 社會的 信望과 犯罪者 改善教化에 대한 熱意, 時間的 餘裕, 生活安全, 活動力을 가진 人事들을 選擇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更生保護會委員의 職務는 刑餘者의 改善 更生으로 再犯을 防止하고 社會를 淨化한다는 우리 나라 刑事政策上 重責의 一端을 負荷하고 있다는 榮譽와 矜持를 가질 수 있도록 成功事例에 대하여는 國家政策的 次元에서의 激勵와 讚賞을 보낼 수 있는 制度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40]

d.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全面 導入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를 全面的으로 導入하여 이것과 現行의 任意的 更生保護制度가 有機的으로 統合運營되게 함으로써 全出所者들의 社會再適應能力을 더욱 効率的으로 뒷받침하게 할 것이 期待된다. 出所者 중 再犯하는 사람에 관한 統計에서 出所後 2～3個月 사이에 가장 많은 數가 公布되고 있는 바, 이 時期는 "累犯孵卵期間"또는 犯罪豫防을 위한 "두번째 機會"(Second chance)[41]로서 이 期間은 出所者의 社會復歸成功與否에 있어 決定的 時期이다.[42]

現在 우리 나라에서는 保護觀察制度의 全國的인 示範實施에 앞서 1983 年 2 月에 釜山, 同年 9 月에는 大田과 全州에서 假釋放者 중 更生保護法에 依한 觀察保護對象者에게 保護觀察制度 試驗實施段階에 있을 뿐 全面的인 有權的 更生保護制度는 導入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假釋放者에 대한 必要的 保護觀察制度와 더불어 刑의 執行猶豫者와 宣告猶豫者에 대한

38) 愼鎭揆, "우리 나라 更生保護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韓沃申博士記念 現代刑事法學의 課題(下). 1980. p.412.

39) 更生保護會支所設置 職員 및 保護委員의 定員 等에 관한 規則 第八條 1 項.

40) 朴良均, "更生保護制度의 改善," 矯正, 通卷第 49 號 (1980,5), p.23.

41) Herber A. Bloch and Gilbert Geis, Man, Crime and Society (New York: Random House, 1962), p.547.

42) M. Grünht, Penal Reform : A Comparative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p.316.

保護觀察制度를 實施하여, 이 두制度를 기초로 한 有權的 更生保護制度의 確立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滿期釋放者 중 犯罪의 常習性 또는 累犯性으로 인하여 再犯의 우려가 顯著히 있는 者에 대하여는 一定期間 有權的 更生保護를 받도록 하는 制度의 개발이 期待된다.[43]

2) 社會的 受態造成

前科者 冷待風潮가 甚한 우리 社會에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理解가 强力히 要請되며 保護擔當者는 勿論 그 親近者 및 大企業 등에서는 刑餘者保護를 위한 受容態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矯正施設에서 職業訓練을 通하여 技術을 習得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社會에 再出發하려는 出所者들이 社會에 復歸할 경우에, 社會人의 認識이 前科者라는 先入感에 그들을 不信하여 職業斡旋을 꺼려하고 職業補導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生計를 維持할 수가 없어서 社會定着이 아주 어렵게 되고[44] 社會의 冷待感情에 悲觀한 나머지 다시금 犯罪를 犯하게 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 같이 再出發하려는 出所者에 대하여 社會가 받아 주려는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은 狀態를 「社會遲滯」(Community lag)[45]라고 하는데, 이러한 社會遲滯現象이 심각한 곳에서는 그만큼 再犯의 惡循環이 되풀이 된다. 따라서 出所者들이 社會에 復歸할때 一般社會에서는 그들을 前科者로만 보고 冷待, 不信, 忌避하지 말고 敎化된 새로운 착한 사람으로 따뜻이 맞이하여 生業斡旋과 監督 그리고 激勵가 隨伴됨으로써 다시금 再犯을 犯하는 경우가 없도록 社會啓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司法的處遇

司法的處遇는 司法的 決定(裁判)의 段階에서 犯罪者의 人格을 考慮하여 어떻게 犯罪者를 處遇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오늘날에는 犯罪人에 대한 刑事 處分의 種類와 方法이 多樣해졌으므로 司法的處遇의 重要性을 看過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46] 여기에서는 起訴猶豫制度와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制度를 中心으로 檢討하고자 한다.

1) 起訴猶豫制度

起訴猶豫는 刑事訴訟法上 起訴便宜主義에 依據한 不起訴處分의 일종이다. 現行 刑事訴訟法上 檢事에게는 有罪의 充分한 證據가 있다고 하더라도 犯罪의 危險性, 犯人의 年齡, 性格, 環境,

43) 愼鎭揆, 前揭書, p.742.

44) John R.Ellingston, Pretecting our Children from Criminal Career(Englewood Cliffs : Pretentice-Hall, 1951), p.161.

45) Harry E. Barnes and Negley K. Teeters, New Horizons in Criminology, 3rd ed.(New york: Prentenice - Hall, 1959), p.543.

46) 朴在允, "우리나라 矯正處遇制度의 改善方案," 國民大學校 法學硏究所, 法政論叢, 第6輯(1984), p.140.

被害者에 대한 關係, 犯罪의 動機, 기타 情況에 비추어 不起訴할 수 있도록 하는 起訴猶豫處分의 광범한 裁量權이 부여되어 있다. 이 制度의 광범위한 活用은 法院의 裁判負擔의 輕減, 犯人의 更生, 拘置所·矯導所의 過剩拘禁을 解消, 受容密度를 緩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起訴猶豫率은 日本의 약 30%보다 훨씬 낮은 13.8%로[47] 檢事들이 起訴猶豫處分의 活用度가 매우 낮은 편이다.

大部分의 犯法者들은 犯罪로 檢擧되어 矯導所 等에 收容하면 所謂 單期自由刑의 弊端을 露呈하여 자칫하면 自暴自棄에 빠지게 되고 또 同僚囚人의 惡感染化를 받거나 또는 釋放後 前科者라는 烙印이 찍혀서 社會의 冷待와 敬遠을 받게 되어 그들 自身의 更生이 극히 어려운 狀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罪質이 弱하고 反社會性이 없는 한 가급적 起訴猶豫의 恩典을 베풀어서 再起의 機會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 要望된다. 特히 少年犯에 있어서는 그 反社會性의 정도를 따져 현저히 社會惡에 感染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結果가 重하다고 하더라도 폭 넓은 起訴猶豫를 活用하여 善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刑의 宣告猶豫와 執行猶豫制度

犯情이 輕微하고 再犯의 憂慮性이 없는 初犯者에 대하여는 刑을 執行하지 않는 것이 形事政策의 目的上 再犯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 特히 短期自由刑은 犯罪人을 改善敎化시키기에는 너무나 短期일 뿐만 아니라 一般豫防的인 效力도 없고 또 그 執行으로 因하여 釋放後의 正常復歸를 困難하게 하여 犯罪의 循環軌道에서 受刑者로 하여금 再犯에 몰아 넣을 可能性이 充分하다. 이러한 短期自由刑의 弊害를 될 수 있는대로 避하려는 趣旨에서 刑을 執行하지 아니하고서도 刑罰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制度를 案出하게 된 것이 곧 刑의 宣告猶豫制度와 執行猶豫制度이다.

a. 刑의 宣告猶豫制度

刑의 宣告猶豫制度의 刑事政策的 意義는 犯情의 비교적 輕微한 犯罪人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함으로써 犯罪人은 感激과 感謝에 넘쳐 그 行狀을 고치어 合法的 生活을 할 수 있는 機會를 보다 有效하게 해줄 可能性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自由刑 特히 短期自由刑 및 財産刑의 執行이 犯人의 性格 내지 生活에 惡影響을 미치는 弊害를 排除하는 代用措置로서도 意義가 크다.[48] 그러므로 裁判機關에서는 宣告猶豫制度를 擴大 適用함으로써 善良한 者가 一時의 잘못으로 犯罪者가 되어 法律上·社會生活上의 不利益을 除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b. 刑의 執行猶豫制度

47) 〈表6〉 參照.

48) 鄭榮錫, 刑事政策(서울: 法文社, 1979), pp.236-237.

刑의 執行猶豫는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 刑法規定의 刑을 執行하는 것을 保留하고 社會的 利益을 保持하면서 한편으로는 善行保持의 條件에 違反하였을 경우에는 所定의 刑을 받아야 한다는 心理的强制를 擔保로 하여 再犯을 防止함과 아울러 犯罪者 자신의 自覺과 奮發에 基한 自發的인 改善·更生을 實現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49] 特히 改悛의 情이 뚜렷한 初犯者에 대하여는 그 장래를 警告하면 足할 경우도 있고, 이에 實刑을 科하면 그 社會生活中斷이 顯著히 困難하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에 依存하여 生活하고 있는 家族에게도 過度의 困難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釋放後 前科者로서 犯罪人에 대한 社會의 不信用은 犯罪人의 更生에 多大한 障碍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50] 따라서 犯罪者의 自力更生의 促進과 再犯豫防의 政策上 이 制度를 擴大 適用하여 保護觀察과의 有機的 結合이 要請된다.[51]

Ⅳ. 結　　論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前科者의 再犯率은 每年 平均 28.6%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고 犯罪手法도 多樣性을 띠고 있어 犯罪의 防止와 犯罪人의 處遇에 刑事政策上 深刻한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이와 같이 再犯率이 漸增하고 그 速度도 加速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莫大한 國家費用으로 이룩된 矯正處遇機關이나 施設에서 犯罪者들에 대한 矯正處遇가 效率的으로 運營되지 못하고 또한 犯罪者들이 社會에 復歸하였을 때 再犯防止에 대한 社會的 保護措置가 微弱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前科者의 再犯을 防止하고 犯罪人의 更生을 돕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施策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行刑矯正處遇施設의 現代化와 多元化를 通하여 分類處遇의 科學化, 改善 敎育의 强化, 社會適應能力의 形成 그리고 社會復歸 후의 經濟的 自立을 위한 職業補導敎育의 積極化가 이루어져야 하고 特히 矯正施設의 弊害를 可能한 한 除去하기 위하여 施設의 內部를 外部社會와 關聯시키거나 또는 一般社會와의 連帶를 깊게함으로써 受刑者의 再社會化를 促進하려는 社會的處遇가 行하여져야 할 것이다.[52]

둘째, 更生保護會機構의 强化와 施設을 擴充하여 보다 많은 出所者들이 相當期間 收容保護를 받게 하고 이와 竝行하여 有權的 更生保護制度가 全面 導入될 것이 期待된다. 또한 一般社會에서는 前科者들에 대한 理解와 協助가 强力히 要求되며 保護擔當者는 물론 그 親近者 및 大企業

49) 鄭盛根, 刑法總論 (서울 : 法文社, 1983), pp.772-773.
50) 鄭榮錫, 前揭書, p.240.
51) 鄭盛根, 前揭書, p.773.
52) 朴在允, 前揭論文. p.144.

等에서는 그들을 위한 受容態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檢察機關과 裁判機關에서는 罪質이 弱하고 反社會性이 없는 初犯者에 대하여는 起訴猶豫, 宣告猶豫, 執行猶豫制度 및 罰金刑 等을 擴大 適用하여 一時의 잘못으로 犯罪者가 된 그들에게 再起의 機會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社會에 있어 發生되고 있는 犯罪의 現象과 原因 그리고 그 對策에 關한 科學的 硏究를 擔當할 犯罪問題硏究所가 國家責任下에 設置될 것이 要求된다.

Summary

A Study on the Correction Treatment for Prevention against Recidivism

Kim Soo-gil

The recidivism today in Korea is increasing at a rate of 28.6 percent per year and the forms of criminal take on varieties, so that serious problems in criminal policy are being brought about.

Such phenomenons lie with the fact that the correctional treatment is not performed adequately in prisons and the offenders are not protected well after their returning to society.

The following policies are to be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1. Scientification of classification system, reinforcement of improvement education, formation of social adaptability and active vocational training of the offenders for self-sufficient economy are to be performed through modernization and subdivis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2. The after-care for discharged prisoners should be extended and intensified. And the persons in general should understand ex-convicts and protectors in parental authority and large enterprises should prepare themselves for receiving them.

3.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should have a wide range of application of stay of adjudication or of execution for first offenders with minor offences and with no anti-social character.